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4월 15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배포 즉시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4. 14.(목)	담당부서	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
담당과장	한상덕 과장(044-203-5860) 이원희 과장(044-203-5870) 김기호 과장(044-203-5880)	담 당 자	구교영 사무관(044-203-5868) 원성진 사무관(044-203-5873) 김성수 사무관(044-203-5888) 남의호 사무관(044-203-5886)

제423차 무역위원회, 반덤핑조사 최종판정

-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5년간 3.60~7.61%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

-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

□ 산업통상자원부 **무역위원회**(위원장 장승화)는 ’22. 4. 14.(목) 제423차 회의를 개최하여 「**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(이하 “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”)의 반덤핑 조사**」와 「**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**」에 대한 **최종판정**을 하였다. 아울러, 「**TV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**」를 **개시하기로 결정**하였다.

<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대한 반덤핑조사 최종 판정 >

□ 우선, 무역위원회는 **제일씨앤피 주식회사가 신청**한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, **조사대상물품의 덤핑수입**으로 인해 **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**하고, **향후 5년간 3.60~7.61%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**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

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.

○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·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금속판으로 **도서·신문·광고지 등의 인쇄·출판**과 **각종 제품의 포장재·라벨 제작**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**상업용 인쇄에 광범위하게 사용**되는 인쇄용 자재이다.

○ 무역위원회는 지난 '21.4.26.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, 세계무역기구(WTO)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, 이해관계인회의, 공청회, 현지실사 검증 등 **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**를 거치며 관련 **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**하고 **방어권을 보장**하였다.

-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이 **정상가격 이하로 수입**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**국내산업이** 판매량 감소, 판매가격 하락, 영업적자 지속 등 **실질적인 피해**를 입었다고 판정하였다.

○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**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('21.4.26.)로부터 18개월 이내**에 덤핑방지관세 **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**하게 된다.

<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>

□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㈜케이아이피가 신청한 **「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」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**하였다.

○ 카이스트의 자회사인 **㈜케이아이피(신청인)**는 해외기업 'A', 'B' 및 'C'(피신청인)가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물품(CPU, 그래픽카드)이 자사의 특허권*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**작년 6월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**했었다.

* 이중-게이트 FinFET 소자 및 그 제조방법(제10-0458288호)

○ 무역위원회는 신청인((주)케이아이피)과 피신청인들(해외기업 'A', 'B' 및 'C')을 대상으로 약 10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, **피신청인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물품이 신청인 특허권을 침해**하였고, **이러한 물품을 국내로 공급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**하였으며,

- 이에 따라, 피신청인 'A', 'B' 및 'C'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.

< TV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>

□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「**TV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**」**를 개시**하기로 결정하였다.

○ '22.3.18일 **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('신청인')**는 국내기업 'D', 해외기업'E'('피신청인')를 상대로, 자신의 **특허권*을 침해하는 물품(TV수상기)**을 **피신청인 E가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**하고 있고, **피신청인 D가 이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**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**조사를 신청**하였다.

* 액정표시장치의 지주 스페이서 형성방법(제10-0488953호) 등 액정표시장치 관련 4개 특허권

○ **무역위원회**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, 피신청인들이 특허권 침해물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거나 수입하여 국내 판매한 **혐의가 있다고 판단**하여 **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**를 결정하였다.

○ 조사 개시 후 **통상 6~10개월** 동안 서면조사, 현지조사,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**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**할 예정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구교영 사무관(044-203-5868), 덤핑조사과 원성진 사무관(044-203-5873), 불공정무역조사과 김성수 사무관(044-203-5888), 남의호 사무관(044-203-588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 반덤핑조사(원심) 개요

□ 조사 개요

○ 신청인 : 제일씨앤피(주) * '21.3.4. 조사신청 / '21.4.26. 조사개시

○ 조사대상공급자 : 중국 러차이, 코닥, 화평 등 3개사 및 그 관계사

○ 조사대상물품 :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 (Presensitized Aluminum Plate with Double-layered Coating for Offset Printing)

- **(정의)**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2회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으로 각 변의 길이가 255㎜를 초과하고 감광면이 2개층인 것(포토폴리머 바이올렛 인쇄판, 재생판은 제외됨)
- **(용도)** 신문, 잡지, 광고지, 포장재 등 옵셋인쇄를 위한 인쇄용 원판
- **(분류)** 관세품목분류번호(HSK) : 3701.30.9100
 * 기본관세율 8%, 한-중국 FTA협정관세율 0%

□ 덤핑방지관세 부과건의수준

공급국	공급자	최종 덤핑률
중국	러차이(Jiangsu Lecai Printing Material Co., Ltd.)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**4.10%**
	코닥(Kodak (China) Graphic Communications Company Limited)과 그 관계사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**3.60%**
	화펑(Chongqing Huafeng Dijet Printing Material Co., Ltd.)과 그 관계사인 화펑PM(Chongqing Huafeng Printing Material Co., Ltd.) 또는 해당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**7.61%**
	그 밖의 공급자	**4.87%**

□ 조사 진행경과

○ 조사개시('21.4.26.) → 이해관계인회의 ('21.7.2.) → 서면의견 접수('21.7.6.~9.8.) → 예비판정('21.9.16.) → 공청회('21.11.18.) → 최종판정('22.4.14.)

참고 2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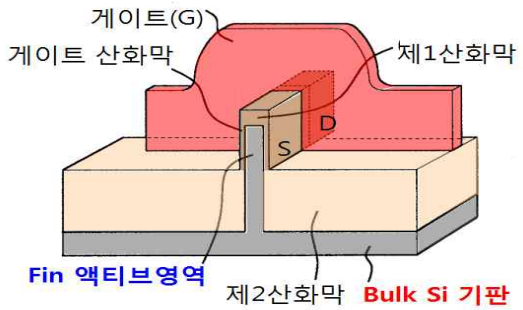
□ 조사신청 개요

○ **(신청인)** ㈜케이아이피(KAIST IP, 전용실시권자)

* 특허권자인 한국과학기술원(KAIST)의 지식재산관리 자회사

○ **(피신청인) 해외기업 'A', 'B' 및 'C'**

○ **(특허권)** 이중-게이트 FinFET 소자 및 그 제조방법(제10-0458288호)

특허 제458288호의 주요 도면	
	• 벌크 실리콘 기판 위에 3차원의 핀(Fin) 형태로 채널 등이 형성되고 채널 위에 게이트가 형성되는 **트랜지스터** • 게이트에 가하는 전압에 따라 전류가 ON/OFF됨

○ **(조사대상물품)** CPU 및 그래픽카드

○ **(신청이유)** 피신청인 'A', 'B' 및 'C'가 신청인의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

□ 조사 결과 (서면조사, 기술설명회, 관세청 통관자료 확인)

○ **(특허권)** 조사대상기간('18.6.23 ~ '21.8.8.) 해당 권리는 유효하게 존속

- 조사대상물품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므로 특허권을 침해

○ **(해외공급)** 피신청인이 조사대상물품을 해외에서 국내 공급한 사실 확인

⇒ 피신청인 'A', 'B' 및 'C'가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여 **불공정무역행위가 인정**됨

□ 판정

○ 피신청인 'A', 'B' 및 'C'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해당 결정 및 과징금 부과 (제423차 무역위, '22.4.14.)

참고 3 TV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

□ 조사신청 개요

○ (신청인) 하이디스테크놀로지(특허권자)

○ (피신청인) 국내기업 'D', 해외기업 'E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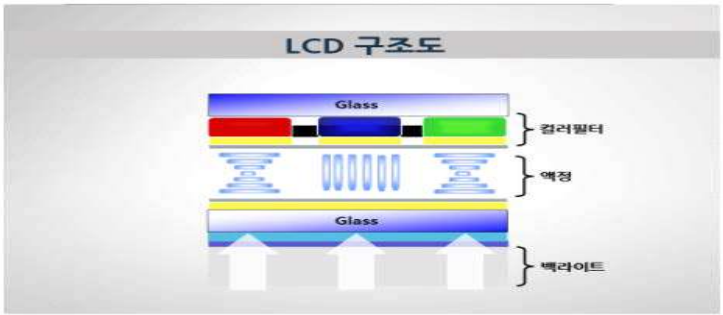
○ (특허권) 액정표시장치(LCD)* 관련 특허 4건(제10-0488953호 등)

* 디스플레이는 LCD(Liquid Crystal Display)와 OLED(Organic Light Emitting Diode)로 구분되며, OLED와 달리 **LCD는 빛을 내기 위한 백라이트가 필요**

특허	등록번호	발명의 명칭
특허 1	제10-0488953호	액정표시장치의 지주 스페이서 형성방법
특허 2	제10-0764292호	액정표시장치
특허 3	제10-2010493호	액정표시장치
특허 4	제10-0982089호	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한 백라이트 유닛

○ (조사대상물품) 액정표시장치를 포함하는 텔레비전 수상기

액정표시장치(LCD) 구조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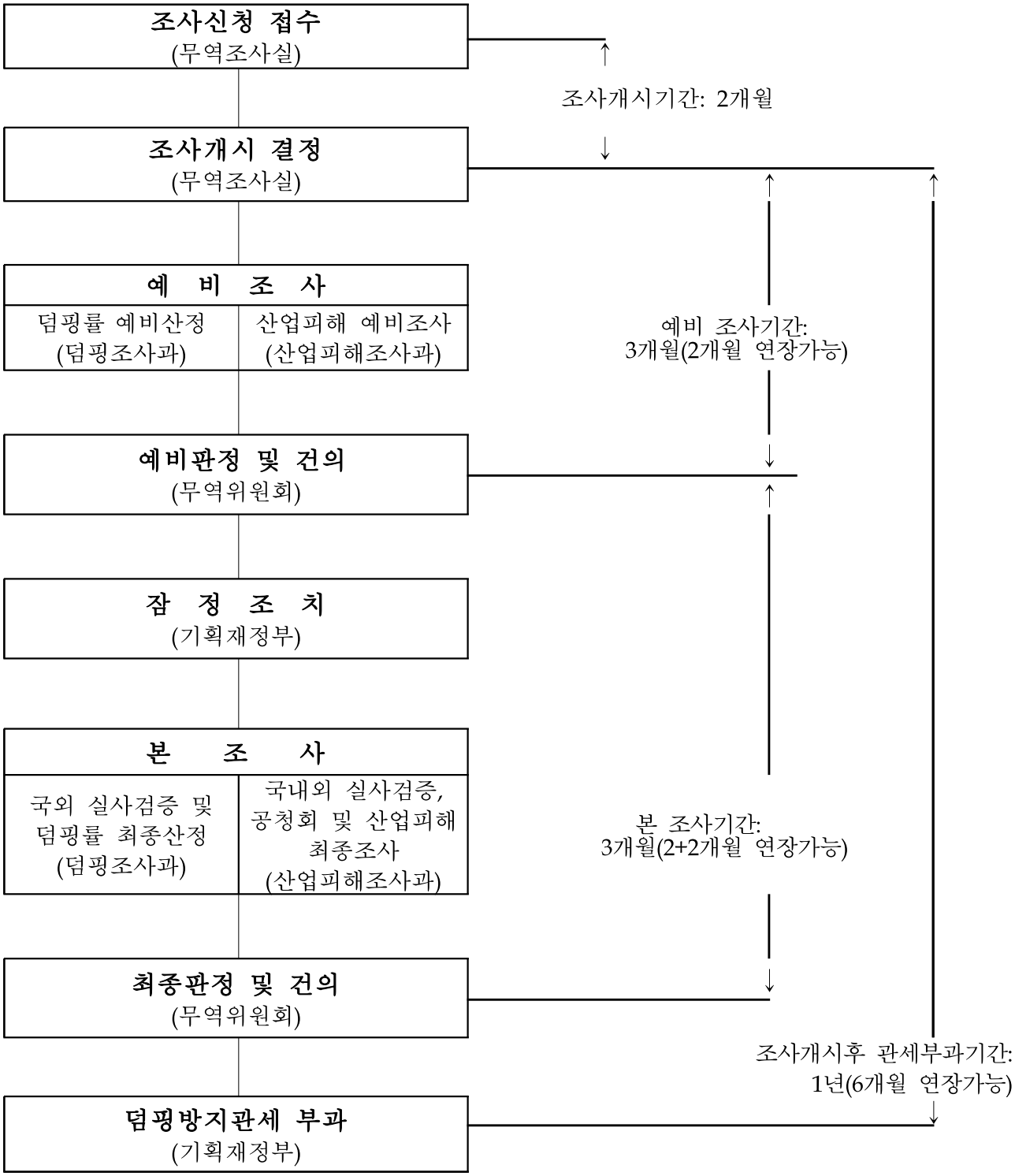
○ (신청이유) **피신청인E**는 신청인의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물품(TV 수상기)을 **중국에서 국내로 공급**하였고, **피신청인D**는 이를 **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**함

□ 향후 계획

○ 무역위 개시 보고('22.4.14.) → 서면조사 및 기술설명회, 전문가 감정 등 실시('22.4월~) →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('22.9~11월, 잠정*)

* 조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판정 일정은 변동 가능

참고 4 반덤핑조사(원심) 절차도



참고 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도

조사신청
(신청인 ⇨ 무역조사실)

- 누구든지, 서면신청(조사신청서+증빙자료)
-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 신청가능

직권조사 : 불공정무역행위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

조사개시 결정
무역조사실 / 위원회보고

① 신청기간, 신청서류 구비요건 검토, 보완
② 조사신청 후 20일내 결정

잠정조치

① 신청인의 잠정조치 신청(담보제공)
② 무역위원회가 시행여부 결정
③ 피신청인에게 잠정조치 명령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
무역조사실

- 서면조사 원칙, 면접 또는 현지조사 가능
- 외부전문가 감정, 기술설명회 등
- 사유발생시 조사 중지 및 종결
-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·판정

피신청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: 제재조치(안)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의견제출기회 부여

산업부 장관 의견청취 : 시정조치(안)에 대해 산업부장관(소관과) 의견조회

최종판정
무역위원회

조사개시 후 6월내 판정(2월씩 2회 연장 가능)
-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
- 제재조치 수단 및 수준 결정

제재조치 시행
무역위원회 ⇨ 피신청인

- 시정조치 명령(시정조치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)
- 과징금 부과

이의신청
(피)신청인 ⇨ 무역위원회

-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내
 *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·소송도 제기 가능

이의신청 심의·결정
무역위원회

- 신청일로부터 60일내 결정(30일 연장 가능)